

부속서 I 주해

1. 이 부속서의 당사국의 유보목록은 제7.6조(비합치 조치 - 국경 간 서비스무역) 및 제11.12조(비합치 조치 - 투자)에 따라,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그 당사국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.
 - 가. 제7.2조(내국민 대우 - 국경 간 서비스무역) 또는 제11.3조(내국민 대우 - 투자)
 - 나. 제7.3조(최혜국 대우 - 국경 간 서비스무역) 또는 제11.4조(최혜국 대우 - 투자)
 - 다. 제7.4조(시장접근 - 국경 간 서비스무역)
 - 라. 제7.5조(현지주재 - 국경 간 서비스무역)
 - 마. 제11.9조(이행요건 - 투자), 또는
 - 바. 제11.10조(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- 투자)
2.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.
 - 가. **분야**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.
 - 나. **관련의무**는 제7.6조제1항가호(비합치 조치 - 국경 간 서비스무역) 및 제11.12조제1항가호(비합치 조치 - 투자)에 따라, 열거된 조치(들)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(들)을 명시한다.
 - 다. **정부수준**은 열거된 조치(들)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.
 - 라. 한국의 경우, **조치**는 유보된 법,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. 호주의 경우, **조치 근거**는 유보된 비합치 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,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말한다. **조치** 또는 **조치 근거**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
 - 1)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·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. 그리고
 - 2)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,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하위조치를 포함한다.
 - 마. **유보내용**은, 한국의 경우, 이 협정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를, 그리고 유보된 **조치**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. 그리고 **유보내용**은, 호주의 경우, 유보된 비합치 조치를 규정한다.
3. 제7.6조제1항가호(비합치 조치 - 국경 간 서비스무역) 및 제11.12조제1항가호(비합치 조치 - 투자)에 따라, 유보항목의 **관련의무**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, 한국의 경우에는 그 유보항목의 **조치** 요소에 명시된 법, 규정 또는 그 밖

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하며, 호주의 경우에는 그 유보항목의 **유보내용** 요소에 명시된 비합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
4. 현지주재와 내국민 대우는 별개의 규율이며 (거주요건과 같은) 현지주재와 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.

5.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, 영주권자,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, 제7.2조(내국민 대우 - 국경 간 서비스무역), 제7.3조(최혜국 대우 - 국경 간 서비스무역) 또는 제7.5조(현지주재 - 국경 간 서비스무역)에 대하여 행해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목록의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11.3조(내국민 대우 - 투자), 제11.4조(최혜국 대우 - 투자) 또는 제11.9조(이행요건 - 투자)에 대한 유보목록의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.

6. 한국의 경우, “외국인” 이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.